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가단523181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김윤찬

피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이선영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 2) 피고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신용보증서의 발급 및 대출 실행

- 1) 피고는 2021. 12. 1.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 피보증인 주식회사 B, 보증기한 2026. 12. 1., 보증금액 7천만 원, 보증비율 100%, 대출과목 원금분할상환일반자금대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
- 2) 원고는 2021. 12. 1.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 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 7천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실행 이후 2022. 1. 26. 서울회생법원 2021하합100416호 사건에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한 후 2022. 3. 23. 이 사건 대출금 70,000,000원 전부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 3)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2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하여 면책한다는

내용의 면책통지를 한 후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라. 신용보증약관 규정

이 사건 신용보증에 적용되는 피고의 신용보증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위 보증채무금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면책되었으므로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1) 피고의 면책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 후 피고의 동의 없이 2022. 3. 4. 대출금 입금전용계좌에 있던 이 사건 대출금 중 남은 금액 50,002,438원(이하 ‘이 사건 회수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다른 대출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신용보증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고 면책사유인 ‘재단의 동의 없이 보증부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권자 기존채권의 상황에 충당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면책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수금을 이 사건 대출이 아닌 소외 회사에 대한 다른 대출채권과 상계한 것은 신용보증약관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회수금의 변제충당’이다. 즉 이 사건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할 신용보증약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회수금에 해당하지 않고, 신용보증사고 후인 2022. 3. 4. 상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신용보증약관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충당하지 않고 그 외 대출채권의 변제에 우선충당할 수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회수금은 이 사건 대출금 입금전용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던 이 사건 대출금 그 자체의 일부인바, 신용보증약관 제13조 제1항 제1 ~ 6호의 다른 보증부대출 우선충당사유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는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기타 당연히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회수금’으로서 이 사건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홍도